

제1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05. 10. 18 ~ 10. 21

조 례 안 상 정

(조례 2건)

거 창 군 의 회

《 목 차 》

연번	건 명	페이지
1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	1
2	거창군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5-56
----------	---------

발의연월일 : 2005년 10월 12일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6명

1. 제정이유

- 우리 농촌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가속화로 이농현상과 고령화가 계속되고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대농가 중심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농가는 농업여건의 불량과 노동력의 감소로 생산력이 저하되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환경이 점차 낙후되는 실정으로,
-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은 도시계획 지역 외의 지역으로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며 소유농지 5,000㎡(1,512평)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사업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영농편의사업, 농기계 구입, 소득증대 사업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으로 함(안 제4조)
- 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이 50만원 이상 500만원의 이하로, 지원액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1농가당 1년 동안 1회 200만원 이하, 최고 3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
- 선정기준은 농지소유 면적 3,000㎡(907평) 이하를 1순위로 하고 차순위로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대 사업 등의 순서로 함(안 제 6조)
- 매년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시행토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담장개량” 이라 함은 주거 환경을 위한 담장의 보수개량 및 주택의 안전을 위한 축대의 정비 등을 말한다.
3. “부엌개량” 이라 함은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 부엌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장실 개량” 이라 함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논·밭두렁 개량” 이라 함은 영농 편의를 위하여 연결한 농지와의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및 절토·성토 등을 말한다.
6. “농로·도수로 개량” 이라 함은 농지의 출입이나 용수공급이 용이하도록 절토·성토 및 구축물의 설치 등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사유시설의 설치나 정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지원대상은 3년이상 거창군내에 거주하고 소유농지가 5,000㎡ 이하인 농업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대상) 사업대상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로개량, 도수로 개량, 논·밭두렁 개량 등 영농편의 사업
3.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 사업
4. 분무기, 관리기 등 농기계 구입
5.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지주목 등 농업용 자재 구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지원기준) ①지원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5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②읍·면별 신청자가 예산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농가당 연간 1회 200만 원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최고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3농가 이상의 공동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선정기준) 신청자가 읍·면별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한다.

1. 농지 소유 면적이 3,000m² 이하 농가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가
3. 영농 편의 및 소득 증대사업 농가
4.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농가

제7조(사업의 신청) ①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3월말 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청구) ①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중 지원금지)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